1998. 3.

제74회 임시회

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사 회 도 시 위 원 회

(전문위원 박 홍 표)

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조례안은 1998년 3월 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3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□ 제안이유

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,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가.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의 지정

○지정주체 : 구청장

○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대상 : 청소년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구역

-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목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

-청소년 유해매체물, 약물 등의 판매·대여·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

-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

-관할지역 주민 1,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
-기타 구청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

○청소년 출입제한구역내 청소년 출입제한시간대의 지정
-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

○지정절차

-지역주민 의견반영 절차 이행 : 공청회, 토론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반영
-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사항 서구소식지 등 게재·홍보

나.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운영

○청소년 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안내 표시문 설치 관리

○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지도·단속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

□ 참고사항

○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5조

○체청 82600-853 ('97. 9. 24)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조례제정표준안

□ **검토의견**

○조례제정의 타당성

-삶의 과정에서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인생과 세계에 관한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로써, 심신 양면에 튼실한 미래의 주역들을 길러내기 위해 청소년에게 **건전한 환경**을 조성해 주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매우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. 그러나 철저한 개인주의와 자기이익 추구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사회, 특히 자생적인 힘에 의해서보다는 외부로부터의 도입에 더 의존한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이른바 **유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**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여러 측면에서 선정적인 유해환경과 청소년의 비행유발과는 매우 **강한 상관관계**가 있다는 것이 많이 입증되고 있습니다.

-청소년보호법 제5조는 해당 지역안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**지방자치단체의 의무**를 규정하고 있으며, **제25조**에서는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-이에 근거하여, 우리 관내에 청소년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구역이 있을 때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읍니다.

○위와 같은 의미에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**조례 제정의 필요성**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, 조례 제정 후에도

가급적 구역 지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청소년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.

-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행정 규제라 할 수 있는데, 행정규제는 그 목적이 **처벌**이 아니라 **태도와 행동의 변화**를 **유도**하는 것이라고 봅니다.

-그리고 행정규제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해도 정부가 개입하여 **민간의 행위**를 **제약**하거나 **통제**를 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, 이는 필연적으로 **인권** 또는 **시민의 자유**와 **상충**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, 만일 어떤 청소년의 거주지가 출입제한구역내에 존재하고 있다든지 또는 귀가의 가장 빠른 길이 출입제한구역을 지나야 하는 경우 등이라면, 출입제한구역의 지정은 그만큼 그 청소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.

-따라서 **1)가능한 한 출입제한구역의 지정은 회피**하도록 노력하고, **2)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**가 있다 하더라도 ①조례의 지정대상 규정의 엄격한 해석과 ②공청회·토론회 등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, **3)**출입제한구역을 지정했다면 획일적이고 실적 위주보다는 하나의 **상징성을 갖는 구역으로 유도·운영**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

○위와 같은 개인적인 의견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**제언**을 하고자 합니다.

-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을 가급적 회피하는 대신에 관련 부서, 관련 기관과의 협조하에 **유해업소 등을 철저하게 지도 단속**

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청소년보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.

-아울러 현재 구성되어 있는 **청소년지도위원, 청소년위원회 등의 유기적인 활용방안**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○ 제출된 조례안 제8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 바, 개인적인 것이기는 하나 전술한 전문위원의 의견이 **적절한 시행규칙의 제정**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.